

# 채권심의위원회운영규칙

제정 2010. 12. 31.

개정 2014. 02. 13.

개정 2015. 04. 27.

개정 2016. 02. 12.

**제1조(목적)** 이 운영규칙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4조에 의하여 한국 콘텐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이 시행하는 콘텐츠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진흥원의 **융합전략기획본부장**과 감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**융합 전략기획본부장**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 <개정 2012.5.3.> <개정 2014.2.13.> <개정 2015.4.27.> <개정 2016.2.12.>

③ 위원은 관련업무와 산업에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정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.

**제3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술료 징수 및 환수를 위한 징수/환수 조건
2.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료/환수금 징수의 면제/유예/감면
3. 기술료를 미납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과 해당 기관 대표에 대한 제재
4.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위반하는 자에 대한 제재
5. 실익 없는 채권에 대한 상각 여부
6. 기술료 및 기타 채권에 대한 법조치 여부
7.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회무를 관장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4.2.13.>

**제5조(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정기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.

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

⑥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위원의 권리를 제한시킬 수 있다. 단, 위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**제6조(간사 및 사무지원)** ①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지원금 회(환)수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사무지원은 심의안전 제안부서에서 수행한다.

**제7조(회의록)** 간사는 모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연직 위원을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 위원의 서명 혹은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참석자
3. 회의사항 및 회의결과
4.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8조(서면결의)**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서면결의 서식에 의하여 서면회의를 통지하고 서면결의서에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한다.

**제9조(기술료 관리 종결 결정)** ① 심의안을 제안하는 부서는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4조제2항에 의거 관리 종결을 요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.

1. 기술료 징수 조치의 적정 여부
2. 기술료 관리 종결 절차의 정당성 여부
3. 상각액 산정의 적정 여부
4. 기술료 관리 종결의 필요 여부

②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4조에 의거 기술료 관리 종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나 지원 사업 담당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.

**제10조(수당의 지급 등)**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진흥원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1조(비밀의 유지)**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는 심의의결사항 중 비밀 또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운영규칙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.

## 채권심의위원회 서면결의서(양식)

처 리 기 간

심의위원회 주관기관 <b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국콘텐츠진흥원</b>	심의위원 (주소, 성명, 연락처)			
<b>심의 대상 내역</b>				
순번	채무자	징수대상액	심의내용	가부결정 및 사유
기타 심의 사항				
상기 심의사항을 채권심의위원회운영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.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20 . . . .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                     심의위원 (인)                 </div>				